

# '98년도 환경개선자금 용자지원

환경관리공단은 '98년도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산업화자금에 대하여 용자지원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해 다소 줄어들어,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에는 540억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기술산업화자금에는 40억원이 지원되게 된다. 또한 관리공단은 IMF여파로 금리가 2%p 인상된 연리 8%로 용자지원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 1. '98년도 환경개선자금 주요지원 내용

- 중소기업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의 경우 업체당 개별방지시설은 5억원 이하, 2개 업체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방지시설은 15억원 이하이고 공사계약서에 근거하여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지원한다.
-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산업화자금의 경우 업체당 환경기술개발자금은 2억원 이하, 환경기술산업화자금은 10억원 이하로 소요자금의 100%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 부분의 자금은 예년에 비해 빨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연도별 용자지원 실적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84~'94	'95	'96	'97	
중소기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자금	업체수	3,272	2,231	348	423	270
	지원금액	3,819	2,235	398	586	600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산업화자금	업체수	76	35	13	15	13
	지원금액	280	102	60	60	58

## 3. 용자지원대상 및 조건

### 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 11조 및 제1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 및 제1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 방지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설치(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 또는 공동 축산폐수정화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설치(변경포함)하고자 하는 자

○용자규모 : 540억원

- 지원한도 및 비율 : • 개별방지사설 - 5억원 이하
- 공동방지사설 - 15억원이하  
(소요자금의 100%이내)

○금리(년) : 8.0%

○대출기간 : 10년(거치3년)

**나.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산업화자금**

- 지원대상 :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와 환경부훈령 제375호('97.12.31)의 환경신기술 평가업무규정에 따른 환경신기술 실용화 평가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
- 특허법 제87조 및 실용신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환경기술을 최초로 산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최초로 산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상을 수상한 환경기술 또는 G-7사업 추진과제로 개발된 환경기술을 최초로 산업화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산신기술(KT마크)로 인정된 환경기술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지정 받은 환경기술을 최초로 산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또는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된 환경신기술을 최초로 산업화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
- 기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경기술을 최초로 산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용자규모 : 40억원

- 지원한도 및 비율 : • 환경기술개발자금 - 2억원이하
- 환경기술산업화자금 - 10억원이하(운전자금 3억원이하 포함)  
(소요자금의 100%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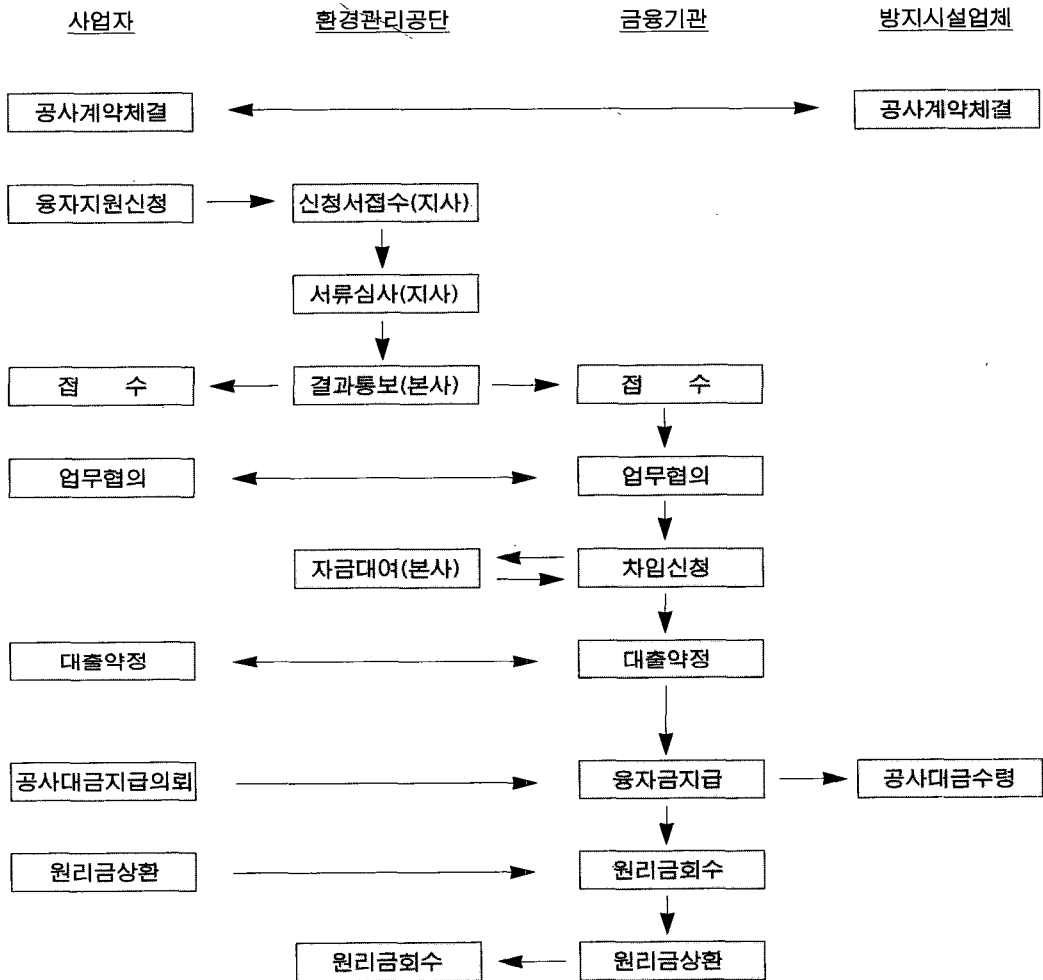
○금리(년) : 8.0%

○대출기간 : 8년(거치3년)

다. 융자취급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시중은행(하나은행, 전북은행제외)

라. 주의사항 : 용자규모는 정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절차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5.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가. 접수기간

- 1998년 12월 20일까지(단,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기술산업화자금은 1998년 11월 30일까지)

나. 접수 및 문의처

- 환경관리공단 본사 : 02)519-0211~3,
-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 : 0331)223-6322~5
-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 : 051)327-9432~3
- 환경관리공단 호남지사 : 062)994-9610~3